

답 변 서

수신인: 강용원,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11, 101동 502호(방배동, 서래아파트)
양정숙, 서울 관악구 봉천3길 12, 301호(성현동, 성현연립)

1. 귀하들이 보낸 2024. 8. 29. 자 통지서는 2024. 9. 1. 잘 받아 보았습니다.
2. 그간 전화로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인은 평택시 소재 서정빌라를 기일에 맞춰 완공하였지만, 건축주 김일동으로부터 공사잔금 3억 원을 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정빌라 101호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3.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때, 자기가 지은 건물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서정빌라 101호는 주택이기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2022. 2. 1.부터 7. 31.까지 인근 공장 직원숙소로 월 200만 원에 임대하여 위 잔금 변제에 충당하였습니다. 잔금 3억 원에 지연이자까지 생각하면, 위 차임이나 저와 제 가족이 서정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기간의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여전히 3억 원 가까운 채무가 남아 있고, 이 돈이 다 변제될 때까지 저는 계속 위 101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최근까지도 계속 지급하겠다는 다짐만 할 뿐 지금껏 잔금을 한 푼도 갚지 못한 건축주가 시비 걸 일도 아니거니와, 전 소유자인 정남이와의 분쟁 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제3자인 건물주가 문제 삼을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그 당시의 소유자도 아닌 강호연 씨 가족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6. 그러므로 저는 서정빌라 101호에 그동안 거주하면서 얻은 수익을 위 공사대금 원리금 채권에 충당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충당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발신인 박광윤, 평택시 서정3길 123, 101호(서정동, 서정빌라)

潤朴
印光



본 우편물은 2024-10-31

제450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평택우체국장

